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인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과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 인상률 : 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

[단위:%]

평균	시설 급여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2.92	3.04	3.24	2.72	3.06	3.34	3.05	11.46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변경

분 류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등급
월한도액	2023년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자 부 담	15%	310,480	280,440	218,370	201,270	172,740
		9%	186,290	168,260	131,020	120,760	103,640
		6%	124,190	112,170	87,340	80,500	69,090

○ 급여종류별 이용시간 급여비용 변경

이용 시간별 급여 비용 변경	분 류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2023년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2024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심신기능 상태가 중증인 1 . 2 등급 수급자의 장시간 급여 이용 일수 확대
 - [현 행]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 제공 가능
 - [변 경]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 제공 가능
- ※ 개정 사항을 고려 하여 1 . 2 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추가 인상
- ※ 3 . 4등급 이하 수급자의 경우 월 4일, 210분 이상 연속 급여 기준 변경 없음.

◆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 ▶치매 가족 휴가제 확대 개편 →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고시 제36조의2]
- ★ 치매가 아닌 중증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부재 3등급 이하의 치매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돌봄을 원하더라도 종일 방문요양 급여의 이용이 불가

현행(2023)		개선(2024)	
치매가족휴가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든 1.2등급 수급자 [치매수급자포함]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18회	단기보호9일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